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근 1년 실적 평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존 라이보위츠(John Leibowitz) 위원장은 2010년 9월 21일 개최된 조지타운대학 주최의 '반독점법 국제 컨퍼런스'에서 최근 1년간 연방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였다.

■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협력 강화

과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셔먼법 제2조 보고서에 대한 갈등, 제약사의 역자를 합의(Pay for Delay) 행위와 관련한 Schering-Plough 건에 대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불협화음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독점금지법의 발전, 국제적인 신뢰 유지를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 간 업무영역 갈등 건 수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 716 건의 기업결합신고 건 중 92건에서 양 기관간 업무 영역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8건이 기관간 대립 없이 문제 발생 6일 내에 해결되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가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역지불 합의 금지 입법화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0년 6월 3일 연방거래위원회를 지지하는 의견서(Amicus Brief)를 제2순회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19일 법무부와의 협력 하에 법조계, 재계, 소비자단체, 국제 반독점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현대 반독점법의 관점, 더욱 발전된

경제적 논리, 글로벌 법집행 경험 등을 반영하였다. 개정지침은, 시장획정이 기업결합분석에 있어서 주요 부분이지만 반드시 분석의 출발점인 것은 아니며, 최종 목표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기업 결합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배타적 행위가 가능한 지위를 얻거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식적 병행행위와 연계될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쟁자의 시장 진입기간을 2년으로 보는 엄격한 틀에 구속되지 않고 시장의 실제 진입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 지침은, 기업의 단독행위효과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독점화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

연방거래위원회는 하이테크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난 2009년 12월 인텔(Intel)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으로 제소한 이후 8개 월간의 심사를 거쳐, 컴퓨터칩 시장에서 10년간 지속된 인텔의 독점기도행위를 동의명령으로 종결한 바 있다. 라이보위츠 위원장은 "인텔에 대한 이번 조치가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 행위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불공정·기만행위에 대한 통합조치인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Google)과 애드몹(AdMob) 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구글이 주요 경쟁자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광고 분야를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에 애플(Apple)의 모바

● ● ● 북 미 ● ● ●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협력 강화 …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불공정한 방법의 경쟁행위 제재) 적용 확대 등

일 광고 네트워크 진출 결정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당초 우려가 완화되어 2010년 5월 21일 동 조사를 종결하였다. 라이보위츠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전상황을 모니터하고, 시장의 발전이 경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텔 건과 구글·애드몹 건은 하이테크 시장에 대한 정책 집행 시 요구되는 신속성과 현실 적응성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인식한 사례로, 인텔 건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구글·애드몹 건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거래에 대하여 문제 제기 없이 허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EU와 기업의 독점적 단독행위(Unilateral Conduct)에 대한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EU법과 미국법 하에서 기업의 단독행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대상 분야는 약탈적 가격 설정, 거래 거절, 끼워 팔기, 조건부 리베이트 등이며, ICN 단독행위 작업반의 업무를 보완하게 된다.

■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불공정한 방법의 경쟁 행위 제재) 적용 확대

라이보위츠 위원장은 “인텔 건의 합의 종결(동의명령)이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현 시대에 유용한 법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조명한다”고 밝혔다. 30년 전, 반독점법의 소관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석되던 때,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근거로 제기한 몇 가지 사건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에 걸쳐 반독점법의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경쟁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아울러 미

국 의회와 연방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경쟁과 소비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수단으로서 유용함을 명백히 하였다. 라이보위츠 위원장은 U-Haul 건(자기운전 트럭 렌트업체)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유용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U-Haul이 경쟁업체인 Budget에 대하여 가격담합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 사건으로, 2010년 7월 20일 동의명령으로 종결되었다. 라이보위츠 위원장은 “동 사건과 같이 ‘단순한 공모제의’에 대해서는 셔먼법 제2조의 적용이 어렵지만,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U-Haul의 반경쟁적 행위 제재를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셔먼법보다 광범위한 반면, 제재의 강도는 약하다. 더욱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3배소 대상이 아니므로 집단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적으로 사적 소송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경쟁당국들이 많은데, 연방거래위원회는 사적 집행의 찬성과 반대 측면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사적 집행 권리, 역지불 합의 건의 동의명령, 기업결합 심사지침 등과 같은 이슈들이 미국의 특유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축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지속적인 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은 보다 더욱 국제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 신용카드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치

D미국 법무부는 2010년 4월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3개 신용카드사를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하였으며, 마스터카드와 비자에 대해서는 합의(Settlement)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율리 경쟁제한 정도가 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행위에 대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위 3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이 카드 이용고객에게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및 보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회비 등 사용비용이 낮은 다른 신용카드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증가되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연간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350억 달러이다.

법무부는 동의명령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고객에게 특정 카드 사용과 관련된 할인, 리베이트, 무료 서비스를 알려주고 연회비 등 사용비용이 낮은 신용카드를 소개하는 행위.

둘째, 특정 신용카드, 저비용 신용카드 또는 다른 지불방법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를 표시하는 행위.

셋째, 정보 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신용카

드, 저비용 신용카드 또는 다른 지불방법을 홍보하는 행위.

넷째, 소비자에게 특정 신용카드 저비용 신용카드 또는 다른 지불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사용고객이 대금 지불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결제수단의 유연성이 더욱 커지고 신용카드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북미 ● ● ●

아시아나의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에서 2100만 달러 배상 합의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미국 노선 항공요금 가격 담합에 대하여 노선 이용 승객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10월 12일 법원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배상금을 받은 승객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동 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원은 한국에서 탑승권을 구입한 승객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였고, 간접구매자들도 항공법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불인정하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제기된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먼저 아시아나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8월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이 뉴욕 주(州) 브루클린 소재의 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되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화물 운송료 및 승객운임 국제카르텔과 관련, 법무부에 의하여 2007년 8월에 대한항공 3억 달러, 2009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 배상 합의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불하는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은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로 구성되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의 합의절차 관련 비용 6만 달러도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한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은 금전배상 이외에 본 담합행위의 증거조사(Discovery)에 대한 협력도 약속하였는데, 협력 내용에는 대한항공 등의 공모자들의 행위와 불법적 공모에 기인한 피해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IT기업의 직원 스카우트 방지 협약 제재

2 010년 9월 24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합의(Agreement)를 통하여 어도비(Adobe), 애플(Apple), 구글(Google), 인텔(Intel), 인튜이트(Intuit) 및 픽사(Pixar) 등 6개사에 대하여, 각 회사 간에 체결한 상대회사 직원 스카우트 금지 협약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어도비와 구글, 애플과 어도비, 애플과 픽사, 구글과 인텔, 구글과 인튜이트는 상대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취업 권유(Cold Calling)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 합의는 각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의하여 체결·운영되었으며, 법무부는 동 합의가 지역·업무 성격·해당 제품·기간 등에 따른 제한이 없었는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제한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임금 형성이 저해되었으며, 기술자들이 더 나은 고용조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이들 6개사와 전화 취업 권유 금지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고용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도입, 유지 및 강화를 5년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사례는 법무부가 진행 중인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고용행태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의 취업 권유를 제한하는 합의에 대하여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북 미 ● ●

캐나다 경쟁당국, 폐기물 처리업체의 기업결합에 따른 자산 매각 승인



2010년 10월 5일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BFI Canada Inc.가 2010년 6월 29일 합의한 기업결합 관련 동의명령(Consent Agreement)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국내 3개 지역 폐기물 수집용 자산의 매각안을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결합은 2010년 7월 BFI Canada의 모기업인 IESI-BFC Ltd.가 Waste Services Inc.를 인수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되는 3개 지역은 캘거리(Calgary), 오타와(Ottawa), 에드먼턴(Edmonton)이다.

한편, 2010년 6월 29일의 동의명령은 기업결합에 따른 캐나다 상업 폐기물 수집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경쟁제한효과를 치유하기 위하여 첫째, 국내 5개 지역(캘거리, 오타와, 에드먼턴, 해밀턴(Hamilton), 심코 카운티(Simcoe County))에서 보유한 상업 폐기물 수집용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고 둘째, 해밀턴에 소재한 Waste Services Inc.의 상업 폐기물을 집하장을 매각하여야 하는 일부 자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Waste Services Inc.와 IESI-BFC Ltd.의 기업결합이 합의되었다.

이번 자산 매각안의 승인에 따라, BFI Canada Inc.의 매각대상인 자산은 계약 중인 고객, 차량, 폐기물 수거함 등을 포함하며, 지역별로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Super Save Group이 캘거리 지역의 자산을 인수하고, Tomlinson Environm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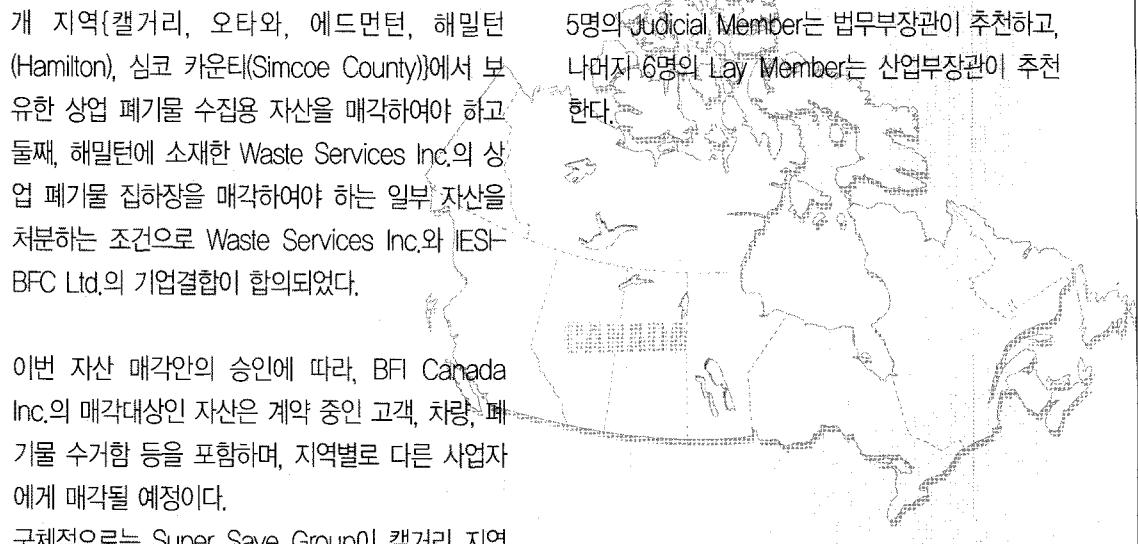
Services가 오타와 지역의 자산을 인수하며, Contrans Corp.이 에드먼턴 지역의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아울러 매각대상 자산 중에서 잔여 자산의 매각 처분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경쟁당국은 이번 매각 건을 승인한 Competition Bureau 및 기업결합 관련 동의명령을 결정한 Competition Tribunal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Competition Bureau는 조사담당기관으로, 국장(Commissioner), 수석부국장 2명, 부국장 4명, 경제전문관 1명과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Competition Tribunal은 심판을 담당하며, 총독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5명의 Judicial Member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의 Lay Member는 산업부장관이 추천한다.



••• EU •••

EU 집행위,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I의 가스수송망 지분 매각안 수용

EU 집행위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이탈리아 에너지기업인 ENI가 제안한 가스 운송망에 대한 경쟁사업자들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시정안에 대하여 Commitment Decision을 채택하고 경쟁법 위반조사를 종결하였다.

'Commitment Decision'은 미국의 동의명령과 유사한 EU의 제도로,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에 근거하고 있다.

시정안에 따르면 ENI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 운송라인 중 이탈리아로 진입하는 3개의 주요 가스 운송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3개 가스운송라인은 북유럽으로부터의 가스공급라인인 TENP, Transitgas 및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라인인 TAG를 말한다.

만약 ENI가 시정안대로 3개 가스운송라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한다면, 가스운송시장에서 ENI의 경쟁사업자들의 3개 가스운송라인에 대한 접근 제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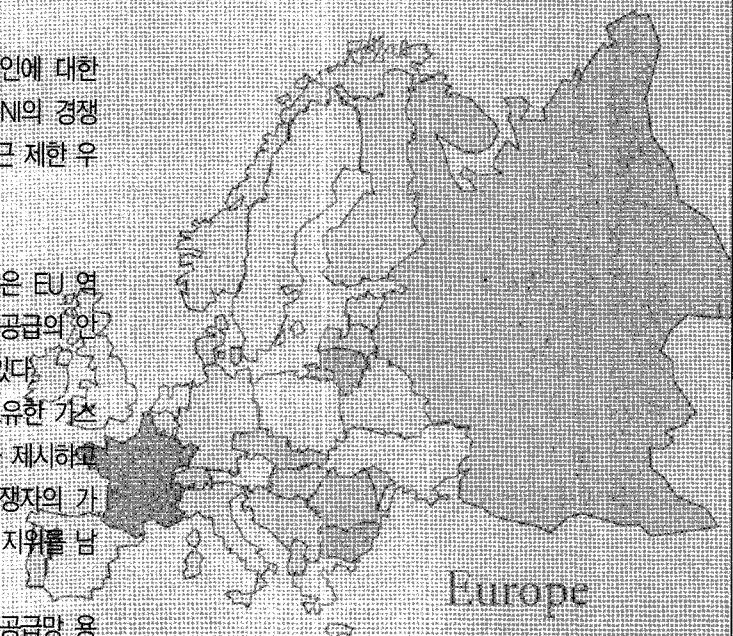
집행위는 가스운송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은 EU 내에서의 가스시장 통합, 가격 경쟁 및 공급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집행위는 본 건의 경우, ENI가 자신이 보유한 가스공급망 사용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운송망에 대한 투자를 축소함으로써, 경쟁자의 가스운송라인 사용을 제한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건의 특징은 집행위가 사업자의 가스공급망 용

량 축소와 전략적 투자 감축을 매점매석(Hoarding)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한편, 집행위는 에너지산업 실태조사(2007년 원료) 후 EU 역내 주요 독과점 에너지기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GDF Suez(프랑스) 및 E.ON(독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Commitment Decision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EU

EU 집행위원과 경쟁총국장, EU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피력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EU 집행 위원과 알렉산더 이탈리아너(Alexander Italianer) 경쟁총국장 등 EU 경쟁당국 최고위 책임자들은, 최근 EU의 경쟁법 집행 절차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파력하였다.

먼저 알무니아 EU 집행위원은 지난 9월 17일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제14차 IBA(국제변호사협회) 연례 경쟁법 회의'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사법절차가 아닌 행정당국에 의한 경쟁법 집행은 신속한 결정을 통해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함께 총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쟁법 집행 각 단계마다 ①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사건 파일 열람권 ③ 청문 기회 ④ 법원에의 제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EU 회원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행정절차를 통하여 경쟁법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전면적인 경쟁법 집행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는 달리 일부분의 개선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규모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① 증거 제출권 보장 ② 필수적인 경제분석팀의 겸보 ③ 이견이 있는 사건에 대한 별도 평가 ④ 청문절차 등 정당한 절차들이 현재에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너 EU 경쟁총국장도 지난 9월 23일 포럼에서 개최된 '국제 경쟁법·경쟁정책에 관한 연례회의'에서 EU 경쟁법 집행의 장점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최근의 법 집행절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이탈

리아너 경쟁총국장은, EU 경쟁당국이 법집행절차에 대한 절차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초 「모범관행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Guideline)」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법 집행절차, 청문 부서의 역할, 경제분석 증거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비록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EU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대륙 법 계통 법체계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심사보고서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 사건 파일에의 접근권, 청문절차 등 피심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집행시스템에 비해서도 피심인은 높은 수준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업별 분석, 첨단 기술을 사용한 경제분석도 행정절차로서의 경쟁법 집행이 사법체계보다 우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하면서 EU 경쟁법 집행절차 각 단계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방안 및 권리보호절차가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 ① 조사단계 : 신중한 절차 진행 및 증거에 대한 상호 검증
- ② 분석단계 : 경제분석, 법률전문가·경제학자들의 별도 의견 제시
- ③ 법률 자문 : 독립적인 부서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실시
- ④ 청문절차 :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 청취
- ⑤ 최종 결정 : 개별 국가·정치·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27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 ⑥ 사법심사 : 집행위 결정에 불복사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음

애플, 아이폰의 수리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약관 수정



A플(Apple)사는 금년 봄부터 진행된 EU 집행위가 실시한 아이폰(iPhone) 수리 및 앱(Application) 개발 관련 약관에 대한 예비조사에 대응하여, 문제된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9월 25일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한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문제 삼았던 조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아이폰의 수리는 구매국(Country of Purchase)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프랑스 거주자가 독일을 방문하여 아이폰을 구매한 경우에 독일에서만 수리가 가능하게 된다.

동 행위는 EU 소비자들의 자국 밖에서의 구매를 제한하고 유럽시장을 분할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아이폰 앱은 애플의 고유 프로그래밍 언어인 Objective-C와 개발 툴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애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기 와의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들 조항에 대하여 애플은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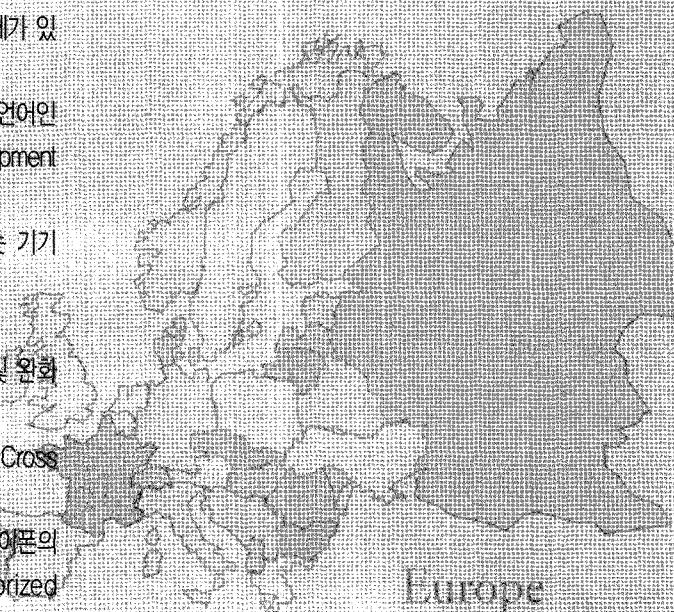
첫 번째 조항은 EU 회원국에 대하여 초국경적(Cross-Border)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애플은 다른 국가에서 구입한 아이폰의 수리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업체(Authorized

service Providers)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조항은 아이폰 앱 개발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다른 언어나 개발 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개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집행위 부위원장인 호아킨 알무니아는 “정식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서도 경쟁법을 활용하여 시장에 신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면서 애플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U

영국, 공정거래청(OFT)과 경쟁위원회(CC) 통합 예정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BIS: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2010년 10월 14일 영국의 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과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DBIS 장관인 빈스 케이블(Vins Cable)은 “이번 통합은 예산 절감 및 정부 전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쟁·소비자 정책 일선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계획(안)에 의하면 기존 공정거래청의 경쟁 관련 업무와 경쟁위원회의 업무는 통합되어 ‘경쟁’ 분야를 관掌하는 유일한 경쟁당국이 탄생하게 되며, 공정거래청의 소비자 관련 업무는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전하게 된다.

우선, 통합 경쟁당국은 시장조사 및 분석, 기업결합, 카르텔, 반독점 사건 관련 업무와 규제설비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소비자 업무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민간·비정부기구가 지나치게 산재함에 따라 각 업무가 중복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 아래, 모든 기구를 통폐합하여 거래기준청(Trading Standards)과 시민자문단(Citizens Advice Service) 등 2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거래기준청은 지방정부 소속기관으로 소비자 관련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자문단은 민

간기구로서 현재 공정거래청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포커스(Consumer Focus)가 담당하는 소비자 관련 연구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자문 등 주창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청과 경쟁위원회는 이러한 정부 통합계획에 대하여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청의 사무처장인 존 핑글턴(John Fingleton)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만약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방안과 양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정거래청과 경쟁위원회의 통합을 포함하여 192개 정부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계획은 내년 한 해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Europe

공정취인위원회, ‘독점적 상태 사업 분야’ 일부 조정

2 010년 9월 30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적 상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독점금지 법상 「독점적 상태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 및 상품」을 일부 조정하였다.

공취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의 4(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독점적 상태에 관한 정의규정 중 사업 분야에 대한 지침(이하 “독점적 상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발표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 분야 조정은 2008년도 국내 총 공급기액 및 사업 분야 점유율에 관한 공동 조사결과에 따라 독점적 상태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고, 2010년 6월 24일 개정안을 공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사업 분야 조정으로 기존 27개 사업 분야(상품 18개, 서비스 9개)에서 상품 분야는 3개 분야(잉크젯 카트리지 제조업, 전기온수 세정좌변기 제조업, 지게차 제조업)가 추가되고, 3개 분야(방열기 제조업, 소크업소버(Shock Absorber) 제조업, 가정용 TV 게임기 제조업)가 제외되어 총 18개 분야를 유지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4개 분야(브로드밴드 서비스업, 통합 오피스 소프트웨어업, 택배편 운송업, 우편업)가 추가되어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31개 분야를 독점적 상태 사업 분야로 명시하였다.

한편, 독점금지법상 독점적 상태는 국내 총 공급액

이 950억 엔을 넘고, 시장집중도(상위 1개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45% 또는 상위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0% 이상)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

〈독점적 상태 사업분야 리스트〉

(1) 상품 분야

상품 분야	사업 분야
츄잉껌	츄잉껌 제조업
맥주(발포주, 맥주풍 주류)	맥주류 제조업
위스키	위스키 제조업
종이말이 담배(일말이 담배, 쓰 담배, 파이프담배)	담배 제조업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제조업
잉크젯 카트리지	잉크젯 카트리지 제조업
음료용 플라스틱병	음료용 플라스틱병 제조업
석고보드·동제품	석고보드·동제품 제조업
금	금 정련·정제업
음료용 자동판매기	음료용 자동판매기 제조업
전기온수 세정좌변기	전기온수 세정좌변기 제조업
자동차용 조명기구	자동차용 조명기구 제조업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 제조업
수송기계용 에어컨	수송기계용 에어컨 제조업
지게차	지게차 제조업
휴대형 게임기	휴대형 게임기 제조업
게임용 카세트	게임용 카세트 제조업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제조업

(2)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사업 분야
고정전기통신	고정전기통신업
브로드밴드 서비스	브로드밴드 서비스업
이동전기통신	이동전기통신업
PC용 기본 소프트(OS)	PC용 기본 소프트(OS)웨어업
통합 오피스 소프트웨어	통합 오피스 소프트웨어업
철도화물 운송	철도화물 운송업
국내 정기항공여객 운송	국내 정기항공여객 운송업
택배편운송	택배편 운송업
우편	우편업
서적·잡지 위탁판매	서적·잡지 위탁판매업
Dust Control	Dust Control업
의료사무 대행	의료사무 대행업
음악저작권 관리	음악저작권 관리업

● ● ● 일 본 ● ● ●

공취위·중소기업청,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 월간’ 운영

공정취인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법”이라 한다)의 엄정한 운용 및 위반행위의 예방, 하청중소 기업진흥법상 진흥기준의 준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11월을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 월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실시한다.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 월간’은 1979년부터 매년 11월에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사업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구두발주의 근절을 위하여 “항상 만들자. 발 주세! 항상 지키자. 하청법!”을 슬로건을 정하고, 경제산업성,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관련단체, 사업자 단체 등의 시설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사업은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강습회 개최, 중소사업자 대상 이동상담회 실시, 업종별 강습회 실시, 중점 감시대상 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다.

이번 하청거래의 적정화 강습회는 47개 지자체에서 원사업자의 하청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하청법 및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대규모소매업자의 납품업체, 물류사업자 등 중소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중소사업자의 소재 지역에 공취위 직원이 출장을 나가 상담하는 이동상담회를 실시한다.

특히, 하청법상 문제가 많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되는데, 중점 감시대상인 도로화물운송업, 일반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소매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등 5개 업종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